

 금융위원회	<h1>보도자료</h1>			 금융감독원
	보도	배포 시부터 즉시	배포	
책임자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석란(02-2100-2680)	담당자	차영호 사무관 (02-2100-2683)	
			유선근 부국장 (02-3145-729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상원(02-3145-7290)		배중기 팀장 (02-3145-7308)	
			이승민 반장 (02-3145-7297)	

## 제 목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6. 15.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모뉴엘 등 4개사에 대하여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잘만테크(주)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다산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 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 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주)모뉴엘(비상장법인)의 감사인에 대한 조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홈페이지 참조\*

\* 한공회 홈페이지(www.kicpa.or.kr)→[감사포털]→[회계감리]→[회계감리결과제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a href="http://www.fsc.go.kr">http://www.fsc.go.kr</a> <a href="http://www.fss.or.kr">http://www.fss.or.kr</a>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늦게 들었습니다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	--	-----------------------------	---

(붙임)

##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2016.6.15. 의결)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지적사항	조치																																																	
(주)모뉴엘	<b>【회사】</b> ① 매출 및 매출원가 등 허위계상 - 회사는 해외거래처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계약서 체결 및 거래증빙 작성을 통해 시장거래가 없는 홈씨어터컴퓨터(HTPC)를 반복해서 수출입한 것으로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아래와 같이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가공의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계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단위 : 백만원)	<b>회 사 :</b> - 증권발행제한 12월 (2016.6.15.~2017.6.14.) - 대표이사 해임권고 * 회사가 법원의 파산선고('14.12.9.) 이후 폐업('16.1.31.) 되어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위법행위 책임자가 동건과 관련하여 관세법, 외감법 등 위반으로 이미 공소제기된 점을 감안하여 감사인지정(3년) 및 검찰고발(회사 및 대표이사) 조치는 실효성이 없어 생략																																																	
결산기 : 2008.12.31. 2009.12.31. 2010.12.31. 2011.12.31. 2012.12.31. 2013.12.31.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08년</th> <th>'09년</th> <th>'10년</th> <th>'11년</th> <th>'12년</th> <th>'13년</th> </tr> </thead> <tbody> <tr> <td>매출</td> <td>70,941</td> <td>153,880</td> <td>265,966</td> <td>410,419</td> <td>744,741</td> <td>1,088,491</td> </tr> <tr> <td>매출원가</td> <td>57,025</td> <td>137,304</td> <td>226,910</td> <td>349,145</td> <td>619,129</td> <td>909,045</td> </tr> <tr> <td>기타손익</td> <td>36,882</td> <td>3,688</td> <td>34,567</td> <td>42,994</td> <td>△30,874</td> <td>102,612</td> </tr> <tr> <td>지분법 평가이익</td> <td>-</td> <td>-</td> <td>-</td> <td>2,129</td> <td>2,787</td> <td>5,597</td> </tr> <tr> <td>당기순이익</td> <td>50,798</td> <td>20,204</td> <td>73,613</td> <td>106,397</td> <td>97,525</td> <td>257,655</td> </tr> <tr> <td>자기자본</td> <td>50,798</td> <td>71,002</td> <td>144,615</td> <td>251,012</td> <td>348,537</td> <td>606,192</td> </tr> </tbody> </table>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매출	70,941	153,880	265,966	410,419	744,741	1,088,491	매출원가	57,025	137,304	226,910	349,145	619,129	909,045	기타손익	36,882	3,688	34,567	42,994	△30,874	102,612	지분법 평가이익	-	-	-	2,129	2,787	5,597	당기순이익	50,798	20,204	73,613	106,397	97,525	257,655	자기자본	50,798	71,002	144,615	251,012	348,537	606,192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매출	70,941	153,880	265,966	410,419	744,741	1,088,491																																													
매출원가	57,025	137,304	226,910	349,145	619,129	909,045																																													
기타손익	36,882	3,688	34,567	42,994	△30,874	102,612																																													
지분법 평가이익	-	-	-	2,129	2,787	5,597																																													
당기순이익	50,798	20,204	73,613	106,397	97,525	257,655																																													
자기자본	50,798	71,002	144,615	251,012	348,537	606,192																																													
비상장법인																																																			
업종 : 컴퓨터 제조업																																																			
	[2008.12.31.] 당기순이익 7,058 → △43,740 자기자본 11,072 → △39,726 [2009.12.31.] 당기순이익 9,357 → △10,847 자기자본 21,424 → △49,578 [2010.12.31.] 당기순이익 16,175 → △57,438 자기자본 37,644 → △106,971 [2011.12.31.] 당기순이익 24,067 → △82,330 자기자본 63,725 → △187,287 [2012.12.31.] 당기순이익 35,804 → △61,721 자기자본 90,045 → △258,492 [2013.12.31.] 당기순이익 59,966 → △197,689 자기자본 139,811 → △466,381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b>잘만테크(주)</b> 결산기 : 2011.12.31. 2012.12.31. 2013.12.31. 2014.03.31. 2014.06.30. 비상장법인 (舊코스닥시장상장법인) 업종 :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	<b>【회사】</b> ①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회사는 모회사인 (주)모뉴엘과 공모하여 진부화된 컴퓨터 모니터 등 부품을 고가로 수출한 것처럼 매출로 계상하거나, 게임용 PC를 해외거래처에서 OEM 제작 후 제3국 수출방식으로 수출한 것처럼 위장하여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한편, 노트북 유통업체들과 사전 협의하여 허위 증빙과 자금을 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단위 : 백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11년</th> <th>'12년</th> <th>'13년</th> <th>'14년 1분기</th> <th>'14년 반기</th> </tr> </thead> <tbody> <tr> <td>매출</td> <td>5,987</td> <td>22,956</td> <td>49,873</td> <td>8,816</td> <td>26,218</td> </tr> <tr> <td>매출원가</td> <td>-</td> <td>18,725</td> <td>40,876</td> <td>7,065</td> <td>20,992</td> </tr> <tr> <td>당기순이익</td> <td>5,987</td> <td>4,231</td> <td>8,997</td> <td>1,751</td> <td>5,226</td> </tr> <tr> <td>자기자본</td> <td>5,987</td> <td>10,218</td> <td>19,215</td> <td>20,966</td> <td>24,441</td> </tr> </tbody> </table>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분기	'14년 반기	매출	5,987	22,956	49,873	8,816	26,218	매출원가	-	18,725	40,876	7,065	20,992	당기순이익	5,987	4,231	8,997	1,751	5,226	자기자본	5,987	10,218	19,215	20,966	24,441	<b>회 사 :</b> - 검찰고발 (회사 및 前 대표이사 1명, 前 담당임원 1명) - 증권발행제한 12월 (2016.6.15.~2017.6.14.) - 감사인지정 3년 (2017.1.1.~2019.12.31.) *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조치는 조치대상 임원 (前 대표이사 및 前 담당 임원)이 퇴사 처리되었으므로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분기	'14년 반기																											
매출	5,987	22,956	49,873	8,816	26,218																											
매출원가	-	18,725	40,876	7,065	20,992																											
당기순이익	5,987	4,231	8,997	1,751	5,226																											
자기자본	5,987	10,218	19,215	20,966	24,441																											
	[2011.12.31.] 당기순이익    △5,488 → △11,475 자기자본       29,659 → 23,671 [2012.12.31.] 당기순이익       1,299 → △2,931 자기자본        40,773 → 30,554 [2013.12.31.] 당기순이익        512 → △8,485 자기자본        47,442 → 28,227 [2014.03.31.] 당기순이익        △457 → △2,208 자기자본        46,985 → 26,019 [2014.06.30.] 당기순이익    △12,368 → △17,595 자기자본       45,064 → 20,623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b>잘만테크(주)</b>	<b>【감사인】</b> ①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년 : 매출 22,956백만원, 매출원가 18,725백만원, '13년 : 매출 44,837백만원, 매출원가 35,989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의 게임용 PC 매출 및 매출원가 가공과 관련하여 제3국 수출방식의 거래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감사절차로서 선적서류 등 외부증빙 확인, 채권·채무조회, 채권회수 채무지급 내역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증빙상 일부 매출품목명이 매입품목명과 달랐고, 매출일자가 매입일자보다 빠른 사례가 있는 등 일부 특이사항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관계 및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b>다산회계법인 :</b>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 잘만테크(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b>공인회계사 : 1인</b> - 잘만테크(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b>공인회계사 : 2인</b> - 잘만테크(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주)로켓모바일 (舊(주)다스텍)</p> <p>결산기 : 2011.12.31. 2012.12.31. 2013.03.31. 2013.06.30. 2013.09.30.</p> <p>코스닥시장상장법인</p> <p>업종: 모바일 약세서리 제조업</p>	<p>【회사】</p> <p>①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11년 9,048백만원, ’12년 23,191백만원, ’13년 1분기~3분기 8,187~20,026백만원)</p> <p>- 회사의 주요 매출처였던 (주)○○○○○ 및 (주)△△△△△이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p> <p>회사의 실질 소유주가 사기대출로 편취한 불법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동 사들과의 매출 거래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p> <p>[2011~2013회계연도 3분기]</p> <p>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p>	<p>회 사 :</p> <p>- 검찰통보 (前대표이사 1인)</p> <p>- 과징금 (회사 16.9백만원)</p> <p>- 감사인지정 2년 (2017.1.1.~2018.12.31.)</p> <p>* 前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 前 대표이사가 사임하였으므로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같음</p>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한생산업(주)</p> <p>결산기 : 2012.12.31.</p> <p>비상장법인</p> <p>업종: 부동산 임대업</p>	<p>【회사】</p> <p>① 소송관련 총당부채 과소계상 (’12년 1,364백만원)</p> <p>-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담하게 된 손실과 관련하여 총당부채를 과소 계상함으로써 자기자본 1,364백만원을 과대계상함</p> <p>② 특수관계자와의 토지거래 주식 미기재 (’12년 5,169백만원)</p> <p>- 특수관계자인 ○○○○(주)로부터 토지를 5,169백만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p> <p>③ 부동산 담보제공내역 주식 미기재 (’12년 3,900백만원)</p> <p>- △△△△△(주)로부터 1,700백만원을 차입하면서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근저당 설정금액 3,900백만원)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p> <p>④ 토지 재평가차익 과대계상 (’12년 180백만원)</p> <p>- 토지를 재평가함에 있어 감정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재평가차익 180백만원을 과대계상함</p> <p>[2012.1.1.~2012.12.31.]</p> <p>당기순이익            32    →    △1,332 자기자본                2,304 →        760</p>	<p>회 사 :</p> <p>- 증권발행제한 8월 (2016.6.15.~2017.2.14.)</p> <p>- 감사인지정 2년 (2017.1.1.~2018.12.31.)</p> <p>* 前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 前 대표이사가 사임하였으므로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같음</p>

##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감사인 지정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舊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과징금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舊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등록취소 건의

-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직무정지 건의

-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